인천 영종국지도 RC4-1,2BL 주상복합 무순위 특별공급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지하층 규모, 주차대수, 세대평면, 커뮤니티 시설,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설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참수칙 운영 안내
- 현장참수칙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http://dxtre-yj.co.kr)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하여 현장참수칙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 등으로 방문이 제한될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세부사항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변경사항 확인 및 시기별 통지 예정)

1. 현장참수칙 운영방법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현장참수칙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제일 이후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청은 특별공급 신청 이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정보 혼잡을 막기 위해 현장참수칙 방문 시 사전청약자 본인 외 보호자 등 동반자는 1인으로 제한합니다.(장애자 1인만 가능)

2. 현장참수칙 방문 시 이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및 장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기침, 발열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예약한 방문 날짜 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전청약의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사전청약 상담전화 ☎1688-5800 및 홈페이지(http://dxtre-yj.co.kr)를 통해 본 아파트 사전청약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있으며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전화 폭주 및 문의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해드릴 수는 없으며 상담 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사전청약 홍보관 운영 안내 : 사전청약 홍보관 및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청약 관련 궁금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청약 모집공고(2022.07.0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청약 모집공고(2022.07.0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청약 모집공고(2022.07.0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요건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청약 모집공고(2022.07.0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전청약 모집공고(2022.07.0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은 주택공급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무순위 요건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세대주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제5항 및 제3호제3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체류세대주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사전당첨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원어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 추 가일 동일국가 제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추가체류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규 가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을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하의 여행, 출장, 피유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을 수 있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하의 여행, 출장, 피유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인정되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를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전의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대"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급신청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와 세대주인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에서 분리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사람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미혼(未婚)인 30세 미만인 자(「민법」 제826조의2에 따른 혼인 중의 출산(出産)의 경우에는 그 출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주택의 공급"이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제외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입주자"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의 "입주자모집공고"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이 일간신문, 주택전시관 또는 견본주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입주자저축"이란 「주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또는 근로자·서민전용 주택청약저축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의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의 "주택조합원"이란 「주택법」 제11조, 제22조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호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조합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2호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의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분양전환"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분양전환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의 "분양전환가격"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6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7호의 "최초 분양전환가격"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최초 분양전환가격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8호의 "최초 임대보증금"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의 "최초 임대료"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최초 임대료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0호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의 "임대의무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8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2호의 "임대차계약"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4호의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5호의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보증금 전환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6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7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8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0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1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2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5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6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7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8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7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9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7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0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7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1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7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2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3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4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5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6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7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8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9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0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0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1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0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0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0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1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5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6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7호의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8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0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2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3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6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7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8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6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0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5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2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4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6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6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6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6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7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6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8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7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7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0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7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7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2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8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8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4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8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8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6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9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7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9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8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9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9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0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0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0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2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0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0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4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1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1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6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1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7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1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8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2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0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2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3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4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6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4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7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8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9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4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0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5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1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2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3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5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횟수를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4호의 "임대료 연체 이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6항에 따른 임대료 연체 이율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5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6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액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6호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6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